

부천시폐기물관리예안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 심사일정

가. 제안일자 : 1997. 11. 4.

나. 제안자 : 전덕생 의원 외 16인

다. 회부일자 : 1997. 11. 4.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56회부천시의회(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회의(97. 11. 8.)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전덕생 의원)

가. 제안이유

- 폐기물이라함은 생활쓰레기에서부터 지정쓰레기까지 종류도 많으며 문제점과 상반되는 민원 등 현대사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라 아니할 수 없으며
- 지금까지는 폐기물의 배출, 수거, 운반, 처리까지 각 부서별로 추진하다보니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놓여있어
- 전문가, 공무원, 의원, 시민 등이 공동참여하여 효율적인 폐기물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협의회를 설치코자 함.

나. 주요골자

-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협의회 설치
- 협의회 기능
 - 부천시 폐기물 처리 기본정책의 개발 및 자문, 추진사항에 대한 심의
 - 청소행정에 대한 조사활동 참여
 - 시민의 폐기물 의식제고 방안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폐기물에 관한 민원제도 개선 제안 등
 - 기타 시장이 폐기물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 협의회에서 조사, 심의까지 하는 것은 권한을 많이 주는 것 아닌지 ○ 위원회 구성에 있어 기업체는 이권개입 소지가 있다고 봄 ○ 위원회 구성원 중 공무원의 범위는 ○ 부천시 조례를 보면 위원회수가 많은데 대부분이 형식에 치우쳐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	○ 협의회는 설치자격이 자문기관으로서 심의기능이 있다고 생각됨 ○ 기업체는 삭제하여도 무관함 ○ 청소과장, 재활용과장, 환경위생과장, 환경사업소장, 하수과장 등임 ○ 본 위원회 구성은 폐기물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위원회임

4. 토론요지

- 협의회에서 조사나 심의까지 한다면 집행부가 어떠한 일을 추진하는데 걸림돌밖에 안 되며 결정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되며
-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기업체 참여는 이권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생각되어 피부로 많이 접하고 있는 시민수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임.

5. 소수의견요지

협의회 구성에 있어 좀더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다음 정기회까지 계류시키자는 의견과, 시민협의회를 협의회라 수정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음.

6.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7. 심사결과

- 수정의결

부천시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안번호	제324호
의결년월일	97. 11. 11. (제56회)

제안년월일:97. 11. 8.

제안자:환경복지위원회장

1. 수정이유

- 폐기물 처리에 관하여 처리부서가 여러 곳이다 보니 연계처리가 안 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협의회를 설치하여 유기적이고 능률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의 목적임에도
- 조사 및 심의까지 할 수 있는 기능은 폐기물 처리에 관하여 통제가능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판단하여 수정이 불가피하며
- 협의회 구성원을 15인 이내로 구성한다라고 할 경우 집행부 임의대로 인원조정을 할 것 같아 연계처리부서인 해당부서 장은 필히 구성원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공무원을 5명으로 하였으며 기업체는 이권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삭제하는 등 구성원마다 인원수를 부여하게 되었음.

2. 주요골자

- “조사·심의”를 “실태조사 및 심의건의”로
- “공무원, 학계전문가, 기업체, 소각시설의 장, 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위원 3인, 환경단체, 시민대표 중에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를 “공무원 5인, 학계전문가 2인, 소각시설의 장 1인, 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위원 3인, 환경단체 2인, 시민대표 3인”으로 수정

부천시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안

부천시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2조의2제1항 중 “조사·심의”를 “실태조사 및 심의건의”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협의회는 폐기물과 관련있는 공무원 5인, 학계전문가 2인, 소각시설의 장 1인, 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위원 3인, 환경단체 2인, 시민대표 3인으로 구성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제정안	수정안
제15조의2(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협의회 설치①)	제15조의2(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협의회 설치①)
.....조사·심의	실태조사 및 심의건의
.....	
②협의회는 폐기물과 관련있는 공무원, 학계전문가, 기업체, 소각시설의 장, 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위원 3인, 환경단체, 시민대표 중에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협의회는 폐기물과 관련있는 공무원 5인, 학계전문가 2인, 소각시설의 장 1인, 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위원 3인, 환경단체 2인, 시민대표 3인으로 구성한다.

[수정안포함]

부천시폐기물관리예관한조레중개정조레

부천시폐기물관리예관한조레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협의회 설치) ①폐기물의 관리·감량 및 재활용, 직정처리 등에 관한 시책의 개발 등 폐기물 업무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실태·조사 및 심의·건의 하기 위하여 부천시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협의회는 폐기물과 관련 있는 공무원 5인, 학계전문가 2인, 소각시설의 장 1인, 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위원 3인, 환경단체 2인, 시민대표 3인으로 구성한다.

③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부천시 폐기물처리 기본시책의 개발 및 자문, 추진사항에 대한 심의
2. 청소행정에 대한 조사활동 참여

3. 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홍보활동 등 자율참여

4. 폐기물에 관한 제도개선 제안 등

5. 기타 시장이 폐기물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④시민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